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61
----------	------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 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범위와 그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여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2016. 2. 3.)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등기·등록 등에 관한 위임사무를 통합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함(안 제5조제26호)
- 나.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및 변상금징수 등에 관한 위임사무를 통합·정비함(안 제5조제28호)
- 다.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용도폐지와 철거 등에 관한 위임사무를 통합·정비함(안 제5조제30호)
- 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별첨 5]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4조, 제35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 관련부서 협의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17. 9. 1. ~ 9. 21.)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교육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별첨 3]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별첨 4]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6조에 의거” 를 “제26조에 따라” 로, “권한중” 을 “권한중” 으로 한다.

제4조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3조에 따라” 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6급이하” 를 “6급 이하”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5조제14호 중 “고입중학생” 을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학교환경위생 정화” 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로 한다.

제5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및 해당 재산의 등기·등록

가. 소관 행정재산, 일반재산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 다만, 매입취득, 처분은 대장가격 5억 원 이하만 해당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에 포함되는 공유재산

제5조제26호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변상금 징수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의 변상금 징수

제5조제28호의2부터 제29호의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소관 공유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와 철거. 다만, 토지는 330㎡  
이하의 경우만 해당된다.

제5조제30호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9호의2 중 “9-2” 를 “9의2” 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의2 중  
“15-2” 를 “15의2” 로 한다.

제7조제13호의2 중 “13-2” 를 “13의2”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6  
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취득·처분 협의 중인 건부터 적용  
한다.

【별첨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의 <u>권한중</u> 일부를 각각 교육장, 소속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제26조에 따라</u>----- ----- ----- ----- -----<u>권한 중</u>----- ----- ----- ----- -----.</p>
<p>제2조 ~ 제3조 (생략)</p>	<p>제2조 ~ 제3조 (현행과 같음)</p>
<p>제4조(명의표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u>의하여</u>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p>	<p>제4조(명의표시) ----- ----- -----<u>제13조에 따라</u>----- ----- -----.</p>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생략) 1~2. (생략) 3. <u>6급이하</u> 일반직공무원의 시보해제 · 대우공무원 선발 · 관내전보 · 휴직 · 복직 · 직위해제 · 의원면직 · 사망면직 · 경징계 3의2 (생략) 4. <u>당해</u>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교육장 제외)</p>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u>6급 이하</u> ----- ----- ----- ----- 3의2 (현행과 같음) 4. <u>해당</u> ----- -----</p>

현행	개정안
<p>5. ~ 12. (생략)</p> <p>13. <u>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u> 무인가 초·중등교육시설의 단속 및 폐쇄명령</p> <p>14. <u>고입중학생</u> 체육특기자 선발(입상 실적조회, 자격심의, 증명서 발급)</p> <p>15. (생략)</p> <p>16. 제10호 각급학교와 공·사립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 특수학교의 조건 및 <u>학교환경위생 정화</u>에 관한 사항</p> <p>17. ~ 25. (생략)</p> <p>26. <u>소관 행정재산의 관리(단, 매입 취득은 대장가격 5억원 이하)·사용허가 및 변상금 징수</u></p> <p>26-2. <u>소관 대장가격 5억 원 이하 행정재산의 교환</u></p> <p>27. (생략)</p>	<p>5. ~ 12. (현행과 같음)</p> <p>13. 「<u>초·중등교육법</u>」 제65조제2항에 따른 ----- -----</p> <p>14. <u>고등학교 입학</u>을 위한 ----- -----</p> <p>15. (현행과 같음)</p> <p>16. ----- ----- -----<u>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u>-----</p> <p>17. ~ 25. (현행과 같음)</p> <p>26.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및 해당 재산의 등기·등록</u> 가. <u>소관 행정재산, 일반재산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 다만, 매입취득, 처분은 대장가격 5억 원 이하만 해당된다.</u> 나. <u>가목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에 포함되는 공유재산</u></p> <p>26-2. &lt;삭제&gt;</p> <p>27.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28. <u>제27호 각급학교의 행정 재산의 취득(단, 매입 취득은 대장가격 5억 원이하) 및 변상금징수</u></p> <p>28-2. <u>제27호 각급학교의 대장 가격 5억 원 이하 행정재산의 교환</u></p> <p>29. <u>소관 일반재산의 관리 (단, 매입 취득은 대장가격 5억 원 이하)·대부 및 변상금 징수</u></p> <p>29-2. <u>소관 대장가격 5억 원 이하 일반재산의 매각 및 교환</u></p> <p>29-3. <u>제26호 내지 29-2호까지의 취득·매각 및 교환 재산의 등기·등록</u></p> <p>30. <u>소관 행정재산 중 건물의 용도 변경·용도폐지 및 철거</u></p> <p>30-2. <u>소관 행정재산 중 330㎡ 이하 토지의 용도 폐지</u></p> <p>31. ~ 36. (생략)</p>	<p>28. <u>소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변상금 징수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의 변상금 징수</u></p> <p>28-2. &lt;삭 제&gt;</p> <p>29. &lt;삭 제&gt;</p> <p>29-2. &lt;삭 제&gt;</p> <p>29-3. &lt;삭 제&gt;</p> <p>30. <u>소관 공유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와 철거. 다만, 토지는 330㎡ 이하의 경우만 해당된다.</u></p> <p>30-2. &lt;삭 제&gt;</p> <p>31. ~ 36. (현행과 같음)</p>
<p>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생략)</p> <p>1. ~ 9. (생략)</p> <p><u>9-2.</u> (생략)</p> <p>10. ~ 15. (생략)</p> <p><u>15-2.</u> (생략)</p> <p>16. ~ 18. (생략)</p>	<p>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현행과 같음)</p> <p>1. ~ 9. (현행과 같음)</p> <p><u>9의2.</u> (현행과 같음)</p> <p>10. ~ 15. (현행과 같음)</p> <p><u>15의2.</u> (현행과 같음)</p> <p>16. ~ 18. (현행과 같음)</p>
<p>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생략)</p> <p>1. ~ 13. (생략)</p>	<p>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현행과 같음)</p> <p>1. ~ 1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u>13-2.</u> (생략) 14. ~ 15. (생략)	<u>13의2.</u> (현행과 같음) 14. ~ 15. (현행과 같음)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와는 해당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장학사 박성기(02-399-9359)

【별첨 3】부패영향평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신 행정관리담당관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관련

가. 서울특별시교육청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나. 부패영향평가 의뢰 [행정관리담당관-8847(2017. 9. 12.)]

2. 부패영향평가는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는 부패영향평가 제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감사관

주무부

행정관리담당사무  
실

감사관

별첨자

시행 감사관-11097

( 2017. 9. 15. ) 접수 행정관리담당관-8091

( 2017. 9. 15. )

우 03178 서울특별시 중로구 순정길 48 (신정로2가, 서울특별시교육청) / <http://www.sen.go.kr>

전화 02-3999-149 / 전수 02-3999-733 / [keumhyun@sen.go.kr](mailto:keumhyun@sen.go.kr)

/ 공개

**【별첨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b>분석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b>				
관리번호	2017A서울교육013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명	박성기	전화번호	02-3999-359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자명	이규엽	전화번호	02-399-9307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17년 09월 12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17년 09월 18일			
<p>해당 과제는 분석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09월 18일</p>				

## 【별첨 5】

# 관계법규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